

## 보 도 해 명 자 료

('17. 2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"불평등 조항' 한미 FTA 협상문서 첫 공개.....  
트럼프 악용 우려" 관련

('17.2.2, 연합뉴스, 경향신문 인터넷 등)

### 1. 기사내용

□ 한미 FTA 서문에 불평등 조항이 삽입되었음

- 동 조항은 NAFTA에도 없는 조항으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임

#### <참고: 한미 FTA 서문 中 투자관련 조항>

[국문] "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서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,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..."

[영문]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, **as in the United States**,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(불평등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) 상기 조항에서 '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(as in the United States)'라는 문구는 例示的 문안으로, 동 조항은 미국과 한국에 공히 적용이 되므로 불평등조항이 아님.

- 한미 FTA 투자챕터에 따라 한미 양국 공히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최소한 자국민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의무가 부과됨

- 아울러 동 조항은 序文(preamble)에 포함된 바, 서문은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조항(additional source)이며 법적으로 그 자체가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

- 당시 우리측은 동 서문이 '실체적 권리'와는 무관한 사안이나, '형식상' 양국이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'한국' 문구를 추가하기 위해 협의했음

- 美 민주당 정부는 '美 의회의 新통상정책에 따라 해당 문안을 FTA 서문에 반드시 반영 해야한다'고 요구하여, 우리측은 동문안에 합의함

\* 美 의회 및 민주당 정부는 '07.5.10 新통상정책을 발표. 美 의회는 협상중인 협정의 서문에 新통상정책에서 요구하는 투자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

□ (동 조항이 NAFTA에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) NAFTA는 '94년에 발효된 협정이며, 동 조항은 NAFTA발효 이후인 '07년 5월 미국의 新통상정책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던 미-페루, 미-파나마, 미-콜롬비아 FTA들에도 반영

□ (트럼프 정부가 한국기업을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) 동 조항을 통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,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도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박찬기 과장 (044-203-5650)  
유의택 사무관 (044-203-5654)